

행정대집행 계고서

성 명: 미 상

주 소: 불 명

인천광역시 영종구 관내해역 일원에 「수산업법」에서 규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구·시설물 설치 및 방치하여 해양환경 훼손, 어업질서 문란 등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8월 10일까지 반드시 불법어구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「수산업법」 제65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무허가 불법 어구

위치	대상 또는 종류	수량	대집행 방법
인천 영종구 운서동 2833 인근 공유수면 (인천공항 북측방조제 인근 갯벌)	○ 불법 어구 시설 일체 -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설치된 시설	불법어구 일체	인천 영종구 또는 제3자 대집행

2026년 7월 27일

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

